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91 | 2025.07.07 (2025.06.30~2025.07.0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T/F를 통해 기본자본 규제 도입, 계리가정 선진화, 보험회사 정리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회 운영,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는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기본법안(정동영의원 등 12인)**」 ,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7인)**」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

재직 및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와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과로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장철민의원 등 12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등에서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관계부처 합동) 7
-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 개최(금융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1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2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 1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4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16
-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16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2인)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20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7인).....20
- 우주기본법안(정동영의원 등 12인)21
-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2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8인).....	22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2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7인)	23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3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1인)	2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4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25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26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6인)	26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	26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7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7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28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8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29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 서범수의원 등 12인) ·	2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 장철민의원 등 12인)	3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 최신 판례 리뷰] 주주대표소송 30일 제소요건 하자는 '회사 거부 의사'로 치유 가능
- [기업지배구조] 이재명 정부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지배구조 리스크 점검의 골든타임 -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 차질없이 추진 중
- 다만, 지방/비주택/2금융·중소건설사 중심 양극화 심화로 자금지원 보강
- PF 건전성 제고 및 위기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2025-07-0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힘

지난 '24.11월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低자본-高보증 PF 구조 개선 및 PF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25.3월에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 TF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

구분	주요내용	대상
① PF사업 자기자본비율 (예:20%) 반영 건전성관리	위험가중치 차등화	은행·증권·보험·저축·여전
	건전성·총당금 차등화	소금융업권
	PF대출시 자기자본요건 추가	상호·금고·여전
② 연체율 등 실재리스크 반영 건전성규제 정비	(계약형태 무관) NCR에 실제위험값 반영	증권
	부동산대출등 위험가중치(예:10%) 가산	상호
	저축·여전업권 수준으로 총당금 조정	증권
③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업권별 PF한도 정비	PF거액신용공여한도 규제 도입	은행·보험·저축·상호
	업권별 부동산(PF) 한도규제 정비	업권별

PF 대출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20%)을 반영하여 건전성 관리를 추진할 계획임

- (위험가중치)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여전업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예:20%)을 기준으로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예 : 현재 100, 150%→ 개선 100, 130, 150% 세분화)
- (건전성·충당금) 금융업권에 대해 PF사업성평가기준에 PF사업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
- (자기자본요건) 리스크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호·금고·여전업권의 경우 저축은행처럼 PF대출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도입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를 정비할 계획임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동 제도개선 방향은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수준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대출부터 적용할 계획임. 향후 금융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방안 및 구체적 한도수준 등을 포함한 실행방안을 '25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임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금융위원회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 개최

-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본격 추진
- 보험부채 할인을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2025-07-0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금번 회의에서는 IFRS17 시행경과 및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방향, 보험부채 할인을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여러 전문가들은 최근 보험사의 K-ICS 비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IFRS17 도입 이후의 판매 경쟁과 장기 보장성 상품 판매 쏠림 등으로 건전성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과도한 판매 경쟁은 완화되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

아울러 향후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시장금리 하락 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보험사의 미래 건전성, 수익성 여건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현재의 건전성 부담이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만큼,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 경영 확립 등을 위해 보다 긴 視界에서 건전성 관리 강화와 건전성 지표의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통해 기본자본 규제 도입, 계리가정 선진화, 보험회사 정리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 아울러,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사의 역할 제고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임

< 보험부채 할인을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 >

이 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성 TF의 첫 번째 주제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등 보험부채 평가 할인을 현실화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음. 최근 시장 일각에서는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며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을 현실화 등 제도적 효과가 중첩될 경우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금융위-금감원은 지금까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부채평가 할인을 현실화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보험사의 건전성 연착륙을 위해 시행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24년에 최종관찰만기 시행일정을 '25년 전부시행에서 '25~'27년 분산시행으로 조정한 사례),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시장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성 TF에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임

이날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①현행 계획을 유지하는 방안, ②매년 금융위-금감원 논의를 통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③최종관찰만기 확대 계획을 사전에 확정하되, 시행 일정을 현재(3년 분산)보다 장기화하여 보험사의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10년~20년물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금융위-금감원은 TF 참여기관들을 포함한 보험업계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8월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임

< 보험사 ALM 관리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 >

최근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자산-부채 실질 만기(듀레이션) 구조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앞으로 인구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으로 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의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힘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위-금감원은 최종관찰만기 등 할인을 현실화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경우 이와 병행하여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번 1차 TF 회의를 통해 제안하였음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회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K-ICS 제도 또는 경영실태평가상 자산-부채 관리(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규제 도입시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들의 경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충분한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 과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향후 계획 >

보험산업 건전성 TF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 1차 회의에서 논의된 할인을 현실화 시행일정 및 자산-부채관리 강화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며, 8월 중 최종 방안을 공개할 계획임. 이어서 기본자본 규제 도입 방안과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TF를 통해 순차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01 시행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범위 등을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01 시행
-------	------------------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01 시행
---------	---------------------------	---------------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감면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기하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수입부과금 인하 폭을 축소하여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톤당 20,605원으로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22 시행 예정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99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800만원, 4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22 시행 예정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 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전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5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따른 대기업 등에 대한 해당 사업의 참여제한 권고, 권고 해제, 공표 및 이행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30 시행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에 대한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2022년 5월 3일 일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에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전에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하도록 특례를 두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착 공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5.07.01. ~2025.08.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와 실행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5.2.27. 국회 의결, '25.3.25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전화: 044-203-5348, 팩스: 044-203-476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30. ~2025.08.11.
---------	------------------------------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3조(수수료)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전화: 043-870-557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7.01. ~2025.08.11.
-----	---------------------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를 개정('25.3월)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범위를 기존 자동차에서 건설기계까지 포함하고자 함

※ 문의처 :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화: 044-201-6930, 팩스: 044-201-6934)

환경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2025.07.02.
~2025.08.11.

종 전 의 ‘기 상 정 보 관 리 체 계’를 ‘기 후 위 기 감 시 예 측 관 리 체 계’로 전 환 하 고, 새 롭 게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률”이라 한다)」이 일부개정(법률 제20849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 / 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감시에측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실제 제도 운영에 맞도록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환경부 기후전략과](mailto:shin&kim@shin&kim.com) (전화: 044-201-6652, 팩스: 044-201-665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2025-07-02 발의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2025-07-03 발의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산업, 이른바 리걸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법률정보기술산업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및 개인의 법률 이용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이 제한받고 있음 이에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법률소비자의 편익 증진도 꾀하기 위하여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2025-07-01 발의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조사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권익 침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의 수사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해도 전문가 참여 없이 임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안 제23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2025-06-30 발의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과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이버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 역시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SKT의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유출 사건으로 국내 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관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을 지키며 추가적인 정보보호 투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관련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 및 인력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2025-07-01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025-07-01 발의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시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61조제3항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025-07-02 발의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 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기부금 또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대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의3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2025-07-03 발의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안 제6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5-07-04 발의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들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2인)

2025-07-04 발의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나, 미국·EU 등 주요국이 철강 분야의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가 철강 덤핑이 증가하는 등 철강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2025-06-30 발의

최근 해킹, 서버 침입, 데이터 유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보호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2023년 1,277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전년 대비 약 48%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대형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이 전체 사회의 안전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한편 2025년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에서 주요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등 현행 정보통신망 보호 체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금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보보호 예산 투자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실태 등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 사고 예방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제45조의4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7인)

2025-06-30 발의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63.3%가 거주하는 공동 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며 미래지향적 스마트홈으로 발전하는 추세임. 그러나 지난 2021년 아파트 월패드 대규모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거주민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홈네트워크 하자판정 처분 소송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의 원인이 설계부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판시하여 홈네트워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설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바 있음

한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있어서도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 전문가의 참여 배제로 인해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층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 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물 생애주기 동안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 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건축주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우주기본법안(정동영의원 등 12인)

2025-06-30 발의

최근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급속히 발전하며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우주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개발 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로 우주개발 진흥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우주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2025-06-30 발의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확산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며, 2023년 기준 매출 5.3조원, 종사자 4.2만명을 기록하는 등 주요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크리에이터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유통을 넘어 사업의 대표이자 핵심 주체로 자리 잡으며, 경제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운영되며, 다수의 크리에이터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수익 분배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크리에이터 활동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8인)

2025-07-01 발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같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공될 뿐,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심정지 발생 후 골든타임 내에 사용해야 하는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위치기반서비스와의 연계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3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2025-07-01 발의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단순하게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이 도입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8개, 사업체의 매출액은 총 4조 4,294억원에 달하며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총 22,359명으로 레저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7인)

2025-06-30 발의

현행법령은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에 본점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6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2025-06-30 발의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현재까지 기술지주회사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및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1인)

2025-06-30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관계 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산업 전반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력 다소비시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력 인프라의 지역 편중 및 지방 산업 입지 유인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예: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반도체 또는 이차전지 제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전력수요시설의 규모, 전력 사용량,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지역 간 균형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립 및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4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5-07-02 발의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하여금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 중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투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자율성에 대한 제한 및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현행법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대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출자 대상에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한 위법행위도 존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그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가 무기한으로 승계될 여지가 있으므로, 승계 기간을 제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 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함으로써 벤처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2025-06-30 발의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농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농촌 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참여와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을 보장하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도시와의 소득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음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의 체계적인 보급 지원체계를 갖추고,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2025-06-30 발의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등)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6인)

2025-07-02 발의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2025-07-03 발의

2025년 5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적합·승인 현황에 따르면 총 45건의 연구계획 적합·승인 중 비수도권지역 의료기관의 연구계획 적합·승인은 5건에 불과하여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 서비스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또한,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 조제1항 및 제6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07-01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의 상당액을 선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 2023년, 2024년 연달아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등 체불피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고정되어 있어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은 도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불피해 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2022년 567만원에서 2023년 648만원, 2024년 722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2024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221만원의 3개월분(663만원)마저도 이미 초과한 상태임

반면 후불임금적 성격을 갖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종 3년분까지도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급범위의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도 있음

이에 재직 및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임금채권소멸시효 및 체불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와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하여,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급범위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025-07-02 발의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1조의4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7인)

2025-07-02 발의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수자원 이용량 366억 m^3 중 재이용량은 불과 4%(14.2억 m^3)에 불과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물그릇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물 재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전국에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설치된 고속국도 휴게소 209개소가 운영 중이며, 일평균 방문객수는 120만명으로 알려져 있음. 산간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대다수인 휴게소 입지 특성상 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하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임. 이러한 휴게소들은 중수도 처리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수 수요처가 존재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휴게소 내 화장실, 세차장 등에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휴게소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중수도 활용처 증대를 통해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025-07-02 발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애 등의 건강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으나, 기존 제도는 주로 사후적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시간 노동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국가책임 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과로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2025-07-01 발의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경우 봄철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겹쳐져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가 어려웠음. 이처럼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산불 등 화재의 특성상 화재의 진화라는 사후적 조치가 아닌 화재의 예방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무인비행장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연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31조의2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서범수의의원 등 12인)

2025-07-01 발의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 장철민의원 등 12인)

2025-07-01 발의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함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시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가 · 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기업체에 임대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을 용지비용까지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 · 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2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2025-07-04 발의

현행법은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사업점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받을 운임이나 요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운 운임에 대하여 가맹금을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같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해 중개한 승객이 아닌 길거리 대기·배회영업 과정에서 받은 승객에게 받은 운임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개계약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7/9(수) 14:00	-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과방위	법안1소위	7/7(월) 10:00	- 법안 심사(R&D 예타 폐지 관련),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	7/7(월) 14:00	-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외통위	전체회의	7/7(월) 10:00	-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국방위	전체회의	7/8(화) 14:00	-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행안위	전체회의	7/10(목) 10:00	-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산자위	전체회의	7/7(월) 15:00	-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7/7(월) 10:00	콜드체인 모니터링 인증제 및 데이터 관리 선진화 방안 국회 공청회	복기왕·김희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7/7(월) 13:30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세미나	박성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7(월) 14:00	다가온 미래, 에너지 대한민국! : 핵융합에너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제	황정아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7/7(월) 14:00	지속가능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전략 세미나	박충권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7/8(화) 09:00	한국형 유·무인 탑재 항공모함 건조와 무인 해양전력 건 설 방안	유용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7/8(화) 10:00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김현정·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306호
	7/8(화) 15:00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 : 디지 털 플랫폼노동·프리랜서의 사회적 보호 실현 과제	이학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7/10(목) 10:00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이용우·김주영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7/11(금) 14:00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향한 첫 걸음, 소아 희귀질환 치료 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이주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자료집 등	7/7(월)	「Data+」 제13호(2025-13호) 발간	국회도서관	
	7/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5호(2025-12호) 발간		
	7/9(수)	「금주의 서평」 제736호(2025-27호) 발간		
	7/8(화)	「NABO Focus」 제116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30(월)	「팩트북」 제117호	국회도서관	
	7/2(수)	「Data&Law」 제31호(2025-6호)		
	7/2(수)	「금주의 서평」 제735호(2025-26호)		
	7/2(수)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3호(2025-13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30(월)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7/1(화)	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 최신 판례 리뷰] 주주대표소송 30일 제소요건 하자는 '회사 거부 의사'로 치유 가능
7/3(목)	기업지배구조	이재명 정부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지배구조 리스크 점검의 골든타임 -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